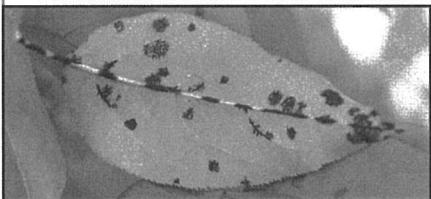




배 검은별무늬병 방제 관련 ‘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’ 요청



농촌진흥청(청장 박현출)은 최근 배 검은별무늬병 방제와 관련하여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며 주의사항을 마련,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에 배포했다.

이는 최근 일부지역 배 재배농가에서 배 검은별무늬병 방제를 위하여 안전사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수도용 살균제 등을 오남용한다는 언론 보도에 따른 것으로써, 관련기관 및 단체에 각종 농약안전사용 교육·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.

교육홍보부

주의사항

- 배에 사용할 수 없는 농약을 사용할 경우,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며 약제에 대한 내성 및 악해 문제가 발생하고, 특히 잔류농약 검출로 인한 배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어 국산 배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음
- 올해 배 검은별무늬병이 많이 발생된 과원은 배 수확 후 병든 잎, 과실 등의 소각, 석회유황합제 살포로 과원내 포자 밀도를 낮추도록 하고, 내년 개화기를 전후로 보호성 살균제와 침투이행성 살균제를 서로 번갈아 살포하는 등 집중 관리하여 주기 바람
- 농업인들은 농약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적용 대상작물에 맞는 농약을 사용하여야 하며,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약관리법 제23조·제40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
- 농약판매상에서도 안전사용기준과 다르게 농약을 사용하도록 추천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되며,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농약관리법 제23조·제4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